

“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”



# 화 성 시

이-1-1/10기  
준도세화서

수신 코리아신탁(주) 귀하 (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, 해성2빌딩10층 (대치동))

(경유)

제목 건축허가 통보 [신축:코리아신탁(주)]

1. 『기본준은 변화, 행복화성』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귀사에서 화성시 송산면 종송리 573번지 상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
3. 건축허가에 따른 등본면허세(세정과 문의 ☎031-5189-2475)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(4,410,000원) 매입 후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건축허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,
4. 세무터(<http://www.eais.go.kr/>) 설계도서(민원인알림문서)에 첨부 사항 및 당초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·안전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설계·감리 계약 시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(공제)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, 위 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붙임 건축허가서 및 조건 1부. 끝.

화 성 시



주무관 최병훈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과장 직권 2022. 7. 8.

접촉자 장 건준보 관

시행 건축허가과-44992 (2022. 7. 8.) 접수

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(화성시청) / <http://www.hscity.go.kr>

전화번호 031-5189-6472 팩스번호 031-5189-1554 / [dkor011@korea.kr](mailto:dkor011@korea.kr) / 비공개(6)

청렴한 담당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.